

2016

부산토론회 종합보고서

[일시]

2016. 10. 25. (화)
10:30 ~ 12:30

[장소]

해운대 센텀호텔
4층 컨퍼런스홀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 이 자료집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집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목 차

■ 위원장 인사말	1
■ 행사일정	4
■ 발 제	5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양재규)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대상 및 과제	
II.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명예훼손	
1. 범죄보도의 두 가지 핵심원칙: 익명보도와 혐의보도	
2. 단순 혐의보도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3. 범죄혐의보도와 알권리	
III. 연예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사생활 침해	
1. 성범죄혐의보도의 특수성	
2. 사생활의 보호범위와 생활영역 구분	
3. 소결	
IV. 나오며: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및 제언	
■ 토 론	26
지정토론문 (문종대)	27
지정토론문 (오창호)	33
지정토론문 (유명준)	37
지정토론문 (조재현)	41
종합토론문	48

위 원 장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아름다운 향도 부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토론회 참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공인의 성범죄 보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언론의 범죄보도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 실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죄보도의 경향을 보면 피의자의 초상이나 실명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관련 보도에서는 범죄의 예방이나 공공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내용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주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알권리와 무관한, 주변인이나 가족의 사생활까지 노출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적 인물로서 이들의 성범죄 사실은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

더라도 유명인에게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명이나 초상을 공개해 이들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건 중 일부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문제의 기사가 무제한 복제·전파되어 이들의 사회 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검찰에서도 언론 보도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유명인의 성범죄 의혹을 보도하면서 수사 중인 혐의를 확정적인 것인 양 실명을 직접 거론하거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들추어낸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보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살펴볼 유명인의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신분에 따른 수인 의무의 정도나 수사단계별 보도 가능 범위 등 언론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범죄보도를 주제로 시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충돌하는 두 법익 간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계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정토론을 맡아 주신 동의대 문종대 교수님, 부경대 오창호 교수님, 부산일보 유명준 논설위원님, 동아대 조재현 교수님, 그리고 부산중재부 중재부장으로 사회를 맡아 주신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언론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0월 25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 용 상

행 사 일 정

10월 25일 (화)

10:30 ~11:20

주 제 발 표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사 회 ■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중재부장

■ 발 제 ■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 토 론 ■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창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중재위원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20 ~12:30

토 론

주제발표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양 재 규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양 재 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지난 몇 달 동안 공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언론은 「○○○, 성폭행 혐의 피소」 내지 「△△△,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와 같은 식의 제목이 달린 기사를 당연히 보도한다. 물론, 언론보도는 대체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소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진행상황을 마치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사건 관계자들의 전과나 이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세세하게 기사화한다.¹⁾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공인에 대한 고소이며 그 사실을 알리는 범죄혐의보도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반드시 알려야 할까?

일단,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뉴스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무려 29,863건으로 인구 10만명당 58.2건이 발생했다

1) 유명 연예인 B 씨에 대한 한 중앙일간지 보도를 예로 들면, 2016년 6월 13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리는 「B, 성폭행 혐의 피소…피해 여성 “화장실에서 성폭행”」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다음날인 14일 「‘성폭행 혐의’ B 강남구청 출근 후 병가…경찰 “증거물 분석한 뒤 소환할 예정”」 및 「B 군복무 1/4은 연가나 병가」와 같이 범죄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군복무 태도에 관한 기사를 냈다. 같은 매체의 다른 유명 연예인 Y 씨 관련 보도에서는 2016년 8월 24일 오전 「Y, 마시지 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제하로 첫 기사를 내보낸 후에 같은 날 오후 「Y 고소녀, 8000만원 빚에 선불금 사기까지」 제하로 고소인의 채무관계 및 재산범죄 관련 의혹을 다뤘다.

(대검찰청, 2015, 13쪽). 이 중에서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바로 이 언론의 선택을 받은 해당 사건들이 ‘뉴스가치’가 있는 범죄인 것이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 범죄의 유형은 단순히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니라 신분이 높거나 저명한 사람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인 범죄라는 것(Stephens, 2010, 141쪽)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범죄보도관행을 연구한 노성호·이기웅(1996)은 유명한 관련 사건에 높은 기사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 언론의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대중은 유명 인사의 일거수일투족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런 뉴스 소비자들의 특성을 보도에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가 연루된 범죄사건은 뉴스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성과 관련된 사건 역시 뉴스가치가 높기 때문에 공인의 성범죄 혹은 성범죄 의혹은 지대한 인간적 관심사로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보도 시점의 문제다. 현재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의 성범죄 관련 보도는 대체로 초동수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공인의 성범죄보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보도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의 ‘시의성(timeliness)’이라는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은 해당 정보의 ‘시의성’이 가장 큰 순간으로서 이 순간을 놓치면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제기 여부를 소추자가 판단하고,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 기일이 잡히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보도하고 마는 것이다(김기창, 2005, 19쪽). 그런데 이 시점이 정보의 시의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정보의 정확성은 몹시 낮은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소사실을 공개하거나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측면이 있다.²⁾

다음으로, 고소 사건의 문제다.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에 뒤따르는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소는 비

2) 실제로 최근에 논란이 일었던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혐의 중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교적 쉽고, 자유로운 편이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라도 고소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도에 있어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박용상, 2008, 735쪽).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2016년 8차 시정권고소위원회 회의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행 혐의 관련 기사를 낸 218개 매체(2016안건385-602)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그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위 기사는 연예인이 성폭행했다는 고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소장 또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범죄 혐의를 보도하였다. 위 기사로 인해 독자들은 피고소인이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후에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피고소인이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사실 및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 결정문 중 발췌)

세 번째로, 성폭행범죄가 갖는 특수성의 문제다. 일반적인 범죄혐의와 마찬가지로, 성폭행범죄혐의 또한 무죄 혹은 무혐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사나 재판 결과 폭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들은 개인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을 폭로한 셈이 된다. 이것은 사회적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라든가 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와는 구별되는 성폭행범죄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과제

이상과 같이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

3)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

혐의보도는 설령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현실 내지 보도관행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 연구한 박용규(2001)에 따르면, 범죄보도의 80% 이상이 재판 전 단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935년부터 1996년에 이르기까지 한 중앙일간지에 기사화된 범죄보도의 사건처리단계별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검찰조사 단계 및 재판과정에서의 범죄보도의 비율이 1.4%에서 18.2%, 14.9%에서 2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단계의 범죄보도 비율은 1935년 8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가 1956년 79.9%, 1976년 76.8%, 1996년 60.8%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일반적인 범죄보도 관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혐의보도, 그 중에서도 성범죄혐의보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의 목적은 법적 관점에서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다. 현재까지 범죄보도 일반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범죄혐의보도, 그 중에서도 성범죄혐의보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논의의 대상을 범죄보도 일반으로 하기에는 다뤄야 할 쟁점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그래서 언론법제 영역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범죄보도 일반에 속하는 쟁점들, 예를 들면 익명보도의 원칙이라든가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문제는 제외하기로 한다.⁴⁾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만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유사한 용어들로 인한 의미의 혼란을 막고자 ‘범죄보도’ ‘범죄혐의보도’ ‘범죄사실보도’를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사용된 표현을 기준으로 단순한 혐의내용만을 보도한 경우를 ‘범죄혐의보도’로 하고 단순 혐의보도를 넘어 범죄혐의가 확실한 것처럼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유죄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보도는 ‘범죄사실보도’로 명명했다. ‘범죄보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4) 이 글의 주된 관심사는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의 성범죄혐의보도다. 이들은 공인으로서 ‘익명보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보도에서 주로 논의되는 ‘익명보도’ 관련 사항은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연구문제 1) 성범죄혐의보도는 공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가?

(연구문제 2) 성범죄혐의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알권리의 대상인가?

(연구문제 3) 성범죄혐의보도는 공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가?

II.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명예훼손

1. 범죄보도의 두 가지 핵심원칙: 익명보도와 혐의보도

범죄보도는 누군가의 일탈행위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범죄라는 일탈행위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규범)를 깨뜨리는 것으로서 당연히 명예훼손적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명예가 저하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명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외적 평가이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범죄보도가 명예 주체의 인격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논외로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보도는 그 행위주체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다. 범죄보도가 갖는 이러한 명예훼손적 효과로 인해 법원 판결을 토대로 확립된 범죄보도 관련 중요한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익명보도의 원칙’이다. 대법원은 범죄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⁵⁾다는 이유로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⁶⁾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범죄의 주체가 공인이 아닌 한 익명으로 보도하라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보도할 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정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시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⁷⁾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또 다른 판결에서 대법원은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無理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⁸⁾고 판시한 바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혐의에 관해 기사를 쓰면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범죄사실에 관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설령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조차 삼가야 한다. 그런 기사는 피의자가 범인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8)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단순 혐의보도에서 멈춰야 한다.⁹⁾ 이것이 말하자면, ‘혐의보도의 원칙’이다. 만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혐의보도의 원칙을 어기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언론사로서는 해당 범죄혐의가 진실이라는 증명을 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밝혀야 하고 이러한 증명의 실패는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¹⁰⁾

2. 단순 혐의보도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익명보도와 단순 혐의보도는 범죄보도에 적용되고 있는 핵심 원칙이다. 문제는 단순 혐의보도 또한 명예훼손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누군가 보도에 언급된 것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추정, 즉 단순한 범죄혐의의 공개만으로도 그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형사절차의 진행 순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수사의 개시만으로도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제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죄추정인 것이다. 단순한 혐의는 후에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될 개연성이 크며, 그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도의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범죄혐의자를 범죄보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부인될 수 없다(박용상, 2008, 712~713쪽).

물론, 이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 2000년 11월 22일 SBS는 <한밤의 TV 연예>라는 프로그램에서 「A 성폭행 혐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유명 연예인 이자 사업가였던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9)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범죄보도에는 제목이나 본문 중에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해당 사건이 수사나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게 되면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 혐의보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익명보도 문제와 같이 역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10)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관련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제목의 크기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근로자들로부터 소송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위 신문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BS의 해당 보도는 논란거리¹¹⁾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2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과 같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단순 혐의보도에 비교적 가까웠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1심 법원은 다음과 판시했다.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유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 원고의 입장도 함께 방영하고 있어 시청자에게 원고가 단순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강간범으로 확정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체액샘플을 방영하면서 자막으로 내보낸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액샘플’이라는 표현 부분도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체액샘플 속에 원고의 정액이 들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소 없지 아니하나 (중략)... 위 표현이 시청자에게 원고가 강간범으로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¹²⁾

단순 혐의보도로는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본 이 판결(2002가합78777)의 결론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유죄라는 인상을 준 것이 아니라 고소당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했으므로 당사자를 비난했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원칙을 지켜 단순 혐의보도 선에서 그치면 당사자가 거의 문제 삼지 않으며 언론사로서는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현실과도 일맥상통한다.¹³⁾ 우리 사회가 보다 신중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법치를 구현하고 있다면 무죄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단지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

11) 해당 방송 내용 중에는 피해자 관련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체액을 채취,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하며 ‘정액샘플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자막을 단 것이다. 이 자막만 놓고 보면, 마치 피해자의 체액 속에 A씨의 정액이 들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전체적인 흐름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2) 서울지방법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8777 판결. 1심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원·피고 양측의 항소로 이루어진 2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반복되었다.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원고가 강간치상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동시에 원고의 조사받는 화면,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됨으로써 위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원고가 강간치상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3나55334 판결) 2심 법원은 1심에서와는 달리, SBS의 보도를 단순 혐의보도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핵심적인 질문, 즉 단순 혐의보도로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내려진 단순 혐의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드문 사례다.

13) 단순 혐의보도가 문제된 판결은 매우 드물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단순 혐의보도를 하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리라고 곧바로 추정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

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사회 일반의 통념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현실상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실에서는 고소장 등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되는 것 자체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을 수 있다(한위수, 2016, 96쪽). 따라서 사회 일반의 통념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은 혐의보도만으로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는 견해가 아닐까 생각한다.¹⁴⁾

3. 범죄혐의보도와 알권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 혐의보도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여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범죄혐의보도 관련 논의는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즉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적 측면으로만 국한시켜 매듭짓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범죄혐의보도와 알권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한 결론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1) 범죄와 알권리

일반적으로 범죄는 그것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관계없이¹⁵⁾ 사회현상의 일부로서 사회적 관심사이며 따라서 언론이 보도해야 할 중요한 시사(時事)적 사항에 속한다(박용상, 2008, 707쪽). 또 범죄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대처를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범죄의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므로 범죄학적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14)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박용규(2001)의 논문(173쪽)은, 범죄보도가 재판 전 단계에만 집중됨으로써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사람들에게는 피의자가 무조건 범인인 양 기억되고 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5) 형법상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 사회적 법익에 관한 것,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간, 절도, 사기 등의 범죄는 개인 간에 발생한 사사로운 문제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개인 간에 발생한 범죄라도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하는 순간부터는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며 따라서 사회적 관심사 내지는 공적 관심사라고 보아야 한다.

(박용상, 2008, 108쪽). 결국, 범죄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 내지 공익성이 있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보도 역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범죄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¹⁶⁾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알권리의 대상으로서의 범죄보도가 갖는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규범안정화 기능이다. 범죄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가 빈발하면 규범체계 나아가 사회 전반의 통치체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보도는 범죄행위에 비판적 조명을 통해 현행 규범체계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이진국, 2002, 26~27쪽).

다음으로는, 한계설정 기능이다. 범죄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한계를 벗어난 일탈행위라는 측면도 있다. 사회는 이러한 일탈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동체가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한다. 이처럼 범죄보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알림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 짓는 한계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진국, 2002, 24~25쪽).

마지막으로, 권력감시 기능이다. 정부 당국을 향한 대책 마련 촉구는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Kovach & Rosenstiel, 2003, 171쪽). 범죄가 사람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 발생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 내지는 정부 당국에 있으며 언론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자로서 범죄보도를 통해 범죄 발생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추적, 공론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대책 마련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2) 범죄혐의와 알권리

이처럼 범죄보도를 알권리의 대상으로 보는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다.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해 규범체계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일탈행위에 가해진 처벌을 알림으로써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한다. 나아가 정부 당국을 향한 범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보도의 의의가 아직 진위 여부조차 불확실한 범죄혐의보도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실 범죄혐의보도는 범죄정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의 범죄 관련 보도는 대부분 성적인 문제나 마약, 음주운전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이른바 ‘황색 저널리즘’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김택수, 2002, 11쪽). 공익적 정보가치보다는 상업적 가치가 크며 알권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에 가까운 것이다. 범죄보도에 알권리 내지 공공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세심하게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 내지 ‘범죄 행태’는 단순한 ‘혐의’가 아닌,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확정사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 유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계라면 유무죄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혐의사실만 가지고 해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나 여론형성을 거론하는 것 역시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3)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별 알권리의 세분화

물론, 범죄보도 일반에 적용되는 알권리 내지 공공성과는 다른,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고려할 만한 세부적인 알권리가 있을 수는 있다.

우선,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된 단계에서는 단순 혐의보도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형사고소·고발은 누구나 아무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으므로 고소나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도에 있어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박용상, 2008, 735쪽). 나아가,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에도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한 것

일 뿐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다. 수사 개시만으로는 결코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박용상, 2008, 738쪽).

다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익명에 의한 단순 혐의보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재판과는 달리 수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명보도는 곤란하다. 물론, 수사상 필요에 의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든가 어느 정도 유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실명에 의한 혐의보도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수사 진행 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비록 보도를 한 다손 치더라도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익명에 의한 혐의보도에 그쳐야 한다.

본격적인 범죄혐의보도가 가능한 단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수사 진행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후다.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공표한 범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혐의가 무혐의 혹은 무죄로 결론난다 할지라도 보도의 상당성을 인정, 언론사의 책임을 면책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범죄혐의보도가 아닌 범죄사실보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일 때로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공식발표가 아닌, 기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통해 개인적으로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토대로 한 보도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연예인의 성범죄혐의보도와 사생활 침해

1. 성범죄혐의보도의 특수성

성범죄혐의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범죄혐의 보도가 일반적인 범죄혐의보도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간,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성범죄는 성적 자유에 관한 죄로서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김일수, 1996, 124쪽) 필연적으로 남녀의 성관계라는

매우 내밀한 생활영역을 다루게 된다. 물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이라든가 ‘피구금자간음’(형법 제303조 제2항)과 같은 일부 성범죄들은 사회적 영역 혹은 공적 영역에서 업무상의 관계 혹은 권력적 관계 하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를 제외하면 많은 성범죄들이 개인의 사적 영역, 그 중에서도 남녀 간의 성관계라는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이처럼 성폭행범죄가 사적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라든가 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 등은 주로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¹⁷⁾

한편, 성범죄혐의보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단계인 초동수사 단계는 아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혐의 혹은 무죄로 결론이 날 수 있다. 특히, 수사나 재판 결과 폭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들은 개인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을 폭로한 셈이 되며 필연적으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사생활의 보호범위와 생활영역 구분

성범죄혐의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여부와 관련해 먼저 생활영역에 따라 사생활의 보호범위에 차등을 주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관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17) 성범죄혐의보도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해서 이러한 논의를 모든 범죄에 확대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다수 범죄들은 사회적 영역 혹은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5년 11월 24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사건을 일으킨 사인이 스스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놓고 정작 자신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은둔할 것이니 그 실명 또는 범죄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상응한 불이익은 상당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5가단5682). 이 사건의 원고는 2012년 강도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탈주한 탈주범으로서 사건 당시 많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월간지가 「역사상 가장 대담한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탈주 사실을 재차 보도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성한다”¹⁸⁾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생활 공개가 항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재형, 2014, 42쪽). 다시 말해, 사생활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공개한 경우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미 학계에서는 인간의 인격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고¹⁹⁾ 각 영역별 공개의 가부 및 그 범위를 정하려는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²⁰⁾ 간략하게나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인간의 생활영역에는 가장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에서부터 공개될 수 있는 것까지 여러 단계의 영역이 있다는 전제 하에 내밀 영역, 비밀 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따른 공개의 가부 및 그 범위를 논하고 있다. 보호의 강도에 있어서 내밀 영역이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공개 영역은 최저 수준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겠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생활영역 구분에 따른 보도 범위

구분	내 용	예 시	보도가능 여부	
			당사자 동의	공익적 목적
내밀 영역	고도의 개인적 사항 인간 존엄 보호를 위한 본질적 내용	성관계, 성적 습관 내면적 양심(일기 등)	가능 (단, 최대한 신중할 것)	불가
비밀 영역	신뢰관계에 기해 표현된 정보 법령에 의한 보호(형법상 비밀침해죄, 비밀누설죄)	의사·약사·변호사·공인 회계사 등의 고객 정보 편지, 통신, 대화 내용	가능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
사사적 영역	제한된 범위 내의 사회적 연관성 자율적 생활영역 보호	가족, 가정 개인의 신상·건강·의료· 재산 관련 정보	가능	비교형량에 의해 가능
사회적 영역	인격의 발현이 애초에 주위 와의 접촉 하에 이루어지는 영역	직업 활동 사회(정당, 이익단체, 사회단체) 활동 일부 중대 범죄	가능	비교형량에 의해 가능 (공익>사익)
공개 영역	모든 사람에게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영역	사회·정치적 영역(방송 무대 출연, 집회) 국가 영역(의회에서의 발언, 법원 재판 등)	보도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18)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9)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인격영역론’이라고 부른다.

20)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명예훼손법(박용상, 앞의 책) 444쪽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생활영역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공개의 가부 및 그 범위를 정하려는 노력은 기사의 위법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실무상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되는 보도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생활 중에서도 내밀영역에 해당한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김재형, 2014, 91쪽). 나아가, 언론계와의 협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보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활영역 구분은 일부 하급심 판결 중에도 다음과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방은 여성의 성적 부위의 하나로서 그 확대를 위한 성형수술은 여성의 비밀영역²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비밀보존의사가 있는 한 이를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도 비밀사항으로서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²²⁾

원고들의 집 내부, 원고 △△△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이 작성한 독서록, 노트, 그림 등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나 기록물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략)... 원고 △△△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이나 피해자 부모로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심히 꺼릴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그와 같은 상처가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²³⁾

이러한 판결의 태도와 생활영역 구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성인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1) 이 판결에서 ‘비밀 영역’이라고 한 것은 그 내용상 학계에서 ‘내밀 영역’이라고 부르는 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밀 영역’이라고 할 것인지 ‘내밀 영역’이라고 할 것인지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22) 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317 · 50737 · 52016 판결

3. 소결

공인의 성범죄혐의의 경우, ‘공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후에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²⁴⁾ 성범죄사실은 사생활이 아니며 특히, 공인의 성범죄사실은 그 공개로써 당사자가 입는 인격권 침해보다 공중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인의 성범죄사실보도에는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없다. 그러나 성범죄혐의는 성범죄사실보도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성범죄혐의에 불과한 사건을 혐의가 밝혀지기 전에 보도했다가 수사 결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이 밝혀진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내밀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적 관계의 무단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언론에서 내밀영역을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고의 아닌 다른 귀책사유, 즉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를 한 경우, 언론은 좀 더 신중하게 보도하지 않은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과실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IV. 나오며: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앞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혐의보도는 피의자로 지목된 공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보도를 대하는 사회 일반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삼을 때, 단순 혐의보도만으로도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될 수 있다. 물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5682 판결

단순 혐의보도만으로는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절차상의 요청(피의사실공표죄)이 언론보도에 시사하는 바는 오히려 혐의보도를 자제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범죄혐의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인 범죄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보도에 공공성이 있으며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에 대한 진위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져 유죄로 판명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범죄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사실로서 증명된 사항에 관한 것이지 아직 수사 중에 있는 혐의에 대한 것이 아니며 고소·고발장의 접수라든가 세부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언론에서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범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범죄혐의가 법원 판결로 유죄로 확정되었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범죄정보를 공개한 이후 보도해야 한다.

셋째, 성범죄혐의보도는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개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성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하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사항에 해당된다. 내밀영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하는 경우라도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성범죄혐의 보도는 내밀영역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 관련 보도인데다 그 시점마저 지나치게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언론은 과실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되는 사생활이 내밀영역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성범죄혐의보도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²⁵⁾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소·고발이 접수된 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범죄보도 가운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것은 앞에서

25) 해당 제언 중에는 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 나아가 일반형사범죄와 관련된 혐의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정보가 공익적 가치가 크거나 알권리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의 시의성이라든가, 홍보에 적극적인 기관의 성격 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형사절차 진행 단계를 고려할 때, 적어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혐의보도를 자제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혐의보도의 원칙’을 지켜 단정적 표현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가급적이면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를 차분히 지켜본 후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시점 전후로 보도해야 한다.

둘째, 성범죄혐의보도는 사건 당사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예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도 자체를 금해야 한다. 성범죄혐의보도 이후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게 되면 제3자들에게는 해프닝에 그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최근 성범죄 여부가 문제되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상황과 B와 저의 진술 내용까지 멋대로 변질된 후, 보도돼 제 사생활은 심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딸이 성관계 몰카를 찍혔다는 데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B와 만나고 다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입니다)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후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라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²⁶⁾

셋째,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범죄보도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언론의 범죄보도관행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노성호(1997)는 보도관행을 형성하는 요인을 기자 개인 요인, 언론의 구조적 요인, 취재원 요인으로 나눠 각각의 요인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노성호, 1997, 4~11쪽). 이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출입처 관행의 폐지다. 출입처를 통하다 보니 언론사 간 특성의 차이가 없이 보도의 획일화 경향이 나타나고 특정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보다는 얇고 넓은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

26) <http://m.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7930>

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외부로부터 시작되기보다 언론계 내부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 역시 해당 문제가 법적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보도 관행에 대한 개선책 역시 언론계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김기창 (2005).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일수 (1996). <형법각론>. 박영사.
- 김재형 (2014).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경북 문경: 언론중재위원회.
- 김택수 (2002). 판결로 본 연예 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언론중재>, 2002 겨울호.
- 노성호 (1997). 언론의 범죄보도관행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1/2월호.
- 노성호 · 이기웅 (1996).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15). 2015 범죄분석. URL: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 박용규 (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권 2호.
-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 이진국 (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위수 (2016). 고소당한 유명인사 관련 보도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언론중재>, 2016 가을호.
- Kovach, B.,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이종욱 역 (2008).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한국언론재단.
- Stephens, M. (2006). *A History of News* (3rd ed.). 이광재·이인희 역 (2010). <뉴스의 역사> (3판). 커뮤니케이션스북스.

토 론

지 정 토 론

문 종 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 창 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중재위원

유 명 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조 재 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은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 단서는 역으로 말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성범죄 고소·고발 사건을 보도할 수 있는가? 그 예외적인 사항만 정리하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 공인과 성범죄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공인의 성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공인과 성범죄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공인 유형과 성범죄 유형과의 조합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정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공인의 성범죄에 대한 보도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자는 강간,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성범죄만 언급할 뿐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가현(2006)은 성범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성폭력이다. 여기에는 폭력이나 강제성이 수반된 강간이나 강간 미수, 강제추행, 권위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나 학대, 근친관계 성폭력,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밀착하여 추행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성매매, 음란한 공연 등 성욕발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세 번째는 혼인빙자 간음죄, 중혼, 스와핑 등 혼인과 관련된 범죄다. 네 번째는 수간,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및 성기 노출, 타인의

사생활 침해보기, 속옷 등을 훔치는 행위 등 변태성욕 행위이다. 다섯 번째는 성희롱 등이다.¹⁾

성범죄 분류를 볼 때 강간과 밀집된 공간에서 상대방 신체부위 부착이 갖는 성범죄 간의 범죄 경중이 다르다. 성범죄 중에서 그 범죄행위가 중할수록 그 범죄 보도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커지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알권리 역시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혐의자의 영향력과 저명성이 높을수록, 고소·고발한 범죄가 중대할수록 고소·고발자의 무고죄 및 명예훼손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진다. 피해자인 고소·고발자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그 성범죄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고소·고발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한 정도의 유죄입증 요인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고소·고발 단계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성범죄 혐의보도의 알권리가 크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익명보도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죄 확정 전에는 범인이나 성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죄 확정전이라도 성범죄 혐의자의 신분이 무엇이나에 따라 익명보도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뿐 아니라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공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만큼,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의 행위가 미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이익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는 공인 분류에 따른 성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성범죄혐의보도에 대해서 유죄 확정 전에는 보도자체를 금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가 행한 성범죄행위의 비중, 고소고발에서 제시된 유죄확정에 관련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본다.²⁾

박용상(1997)은 미국 판례법상의 공인분류에 따라 공무원, 전면적 공직인물, 논쟁사

1) 윤가현 (2006, 8월). <성범죄의 심리학적 접근>. 2006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서울: 서울대학교.

2)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이다.

안의 공적인물, 제한적 공적인물, 타의에 의한 공적인물, 사인으로 분류하고 있다.³⁾ 반면 이부하(2012)는 공직자, 공적인물(전면적 공적인물, 제한적 공적인물), 비자발적 공적인물로 분류하고 있다.⁴⁾

본 논의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분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먼저 선거직을 포함한, 그러나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의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 또는 통제권을 갖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 둘째, 저명성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공적인물(전면적 공적인물과 제한적 공적인물로 분류), 셋째, 자의에 의해 특정한 공적 논쟁에 영향력을 갖고 관련한 논쟁사안의 공적인물, 넷째, 유명인사의 가족, 범죄의 피해자 등 자발적으로 공적논쟁에 참여하지 않은 비자발적 공적인물(타의에 의한 공적인물)로 분류했다.

2.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

본 논의의 핵심은 공인들이 성범죄혐의로 고소·고발당하였을 때 보도할 것인지의 여부와, 보도한다면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 성범죄 혐의의 경중, 고소·고발 때 제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공인의 명예 및 사생활보호 측면보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유죄확정이 명백하고, 아주 극악한 강간폭행 치사 사건 등 공적 관심사가 지대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보도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에는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가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 내에서 명백하게 중요한 지위를 보유하고 국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가진 공직자는 공적 관심사의 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서, 그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일반국민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이부하, 2012,

3) 박용상 (1997).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282-2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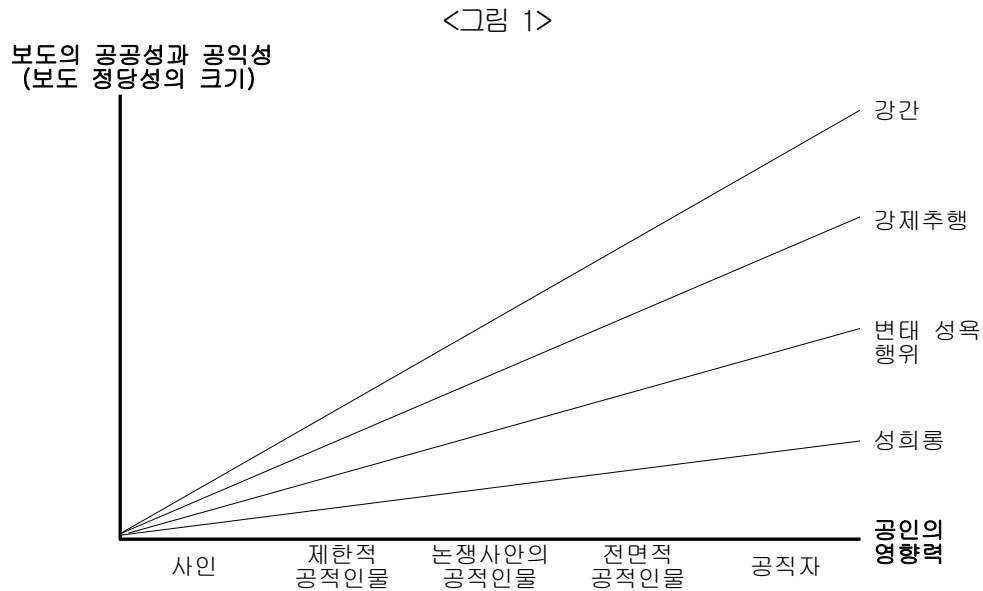
4) 이부하 (2012).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서울법학>. 20권 1호.

51쪽). 따라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는 성범죄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공적관심사가 될 수 있다.⁵⁾ 그러나 공직자라 할지라도 성범죄 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소·고발인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직자의 직위 또는 직무 행위와 관련 없는 사인간에 발생한 성희롱 등의 경우 좀 더 엄격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성희롱 위법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의사에 반함’은 행위 이후에 구성되는 관계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성희롱이 행해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어 위법성에 대한 다툼이 많다. 또한 성희롱 자체는 사회적 관심사이긴 하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그 위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익명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공인의 분류상 전면적 공적인물은 공직자의 수준에 준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나 인지도를 갖지 않은 제한적 공적인물 및 논쟁사안의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성범죄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킬 정도가 아닌 한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비자발적 공적인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 성범죄 혐의의 경중, 고소·고발 때 제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성범죄와 공적인물과의 조합에 따른 공적관심사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영향력이 큰 공인일수록, 그리고 성범죄의 정도가 심할수록 성범죄 혐의보도의 정당성 및 실명보도의 정당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5) 공직자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크고, 언론매체에 접근할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특정 공직 선택 및 공적 논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이론의 중요한 논점이다.



3. 결론

공인의 성범죄 보도는 공인의 성격과 성범죄 성격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관심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인의 영향력에 따른 분류와 성범죄의 분류를 토대로 공인의 성범죄 혐의의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저명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범죄의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면 할수록 고소·고발 단계의 성범죄혐의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정당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인의 영향력이 클수록, 고소·고발한 성범죄 내용의 사회적 관심이 클수록, 고소·고발자 역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위험부담이 커진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될 수 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적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인 고소·고발인도 ‘비자발적 공적인물’이 된다. 최소한 재판 결과 무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고소·고발인은 피해자 신분으로서 그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의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죄가 확정되어 고소·고발인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논쟁사안의 공적인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인도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고소·고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이면서 약자인 그들은 억울함이나 피해를 사회에 호소하고 싶어할 것이다. 특히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소·고발자의 위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고소·고발을 시도한 것은 그만큼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⁶⁾ 발표자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성범죄혐의 보도로 인한 공인의 명예훼손 관점에서 보고 있다. 관점을 바꾸어, 공인들에 비해 약자이자 성범죄 피해자인 고소·고발인의 관점 및 사회정의론 관점에서 본다면, 공인의 성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의 자유 보장만큼이나 언론 역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언론은 고소·고발 사건에 제시된 정황뿐 아니라 증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보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공인의 성범죄혐의 사실 보도에 대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언론의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언론은 피해자가 된 공인들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사건을 종합 정리보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독자에 대한 예의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에 있어서 시의성과 속보성은 뉴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흥미거리와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공인의 성범죄혐의 보도는 여전히 상품가치가 높은 뉴스다. 이미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뉴스는 결과를 알고 보는 축구경기와 같다. 그리고 그것은 단막극 같은 이야깃거리다. 반면 공인의 성범죄 사건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재판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생산해 낸다. 일종의 연속극 같은 것이다.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뉴스 상품을 멈출 언론들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익명의 주인공으로 연속극을 쓸 수 있을까?

모두가 모두에 의한 뉴스 생산시대에 언론이 익명보도를 한다고 해서 익명성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무수한 추측성 보도들이 생산될 것이고 그 유탄으로 오히려 무고한 공인들이 거론될 수도 있다. 오히려 정확한 사실보도와 탐사보도를 통해 난무하는 의혹들을 잠재우는 것이 더 타당한 보도일지 모른다.

6) 물론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밝혀 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이유로 고소·고발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반드시 알려야 할까? 발제자께서는 이 글의 문제의식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이른바 스타와 관계된 성폭행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행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한 종합판단(juris prudence)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발제자 역시 고려 사항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니고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발제자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실정법의 태두리를 넘어서 만약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참고해 볼 수 있는 고려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발제자께서는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반드시 알려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뉴스가치’라는 근거를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이 관계된 범죄 사건과 성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이 언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평가는 인터넷 등 각종 소셜 미디어가 등장한 오늘날의 매체환경에서 변화된 언론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19세기 이후의 전통적인 언론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뉴스 소비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온갖 신문과 방송이 제공하는 뉴스를 매일 편집해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싣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는 포털에 집결되고, 그 곳에서 재가공, 재배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포털의 편집원칙은 전통 언론의 편집원칙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전통 언론의

편집원칙이 이른 바 ‘뉴스가치’에 있다고 한다면 포털 언론의 편집원칙은 ‘검색순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들이 초기화면에 띄우는 뉴스는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가십성 기사, 또는 생뚱맞은 정치적 주장처럼 대개 흥미 위주이거나 자극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려야 하는 근거로서 ‘뉴스가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범죄혐의보도와 알권리’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발제자께서는 범죄보도의 두 가지 핵심원칙을 언급하면서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보도할 때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정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혐의보도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보도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명예훼손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명예훼손 여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제자께서는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알권리를 세분화함으로써 ‘수사 개시 단계’, ‘수사 진행 단계’, ‘수사 결과 공개 단계’로 나누어 각각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별 보도 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알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 권리의 취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도하는 기사가 과연 그러한 알 권리를 보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기사의 성격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께서도 대부분의 범죄혐의보도는 “공익적 정보가치보다는 상업적 가치가 크며 알권리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권리 역시 전통적

인 저널리즘에서 유효한 개념으로서 포털 저널리즘 혹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고소, 고발 사건의 배후에는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하는 복수심 따위의 불순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은 사회적 감시나 알 권리를 실현하기보다는 시청자나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매체과위를 키우려는 의도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포털이 추구하는 뉴스 서비스의 목적은 오직 접속수와 방문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 고발의 당사자와 언론은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이 연극의 주연이라면 독자나 시청자는 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나 시청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냉소하면서도 이 연극에 자신도 모르게 참여함으로써 말초적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역사에서 ‘황색 저널리즘’ 혹은 ‘가십 저널리즘’(gossip journalism)이라고 하는 이런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그 연원이 오래고 좀처럼 사라질 수도 없는 필요악(necessary evil)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된 요즘, 가십 저널리즘은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로 인해 사회가 맑고 투명하게 되기는커녕,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애초에 이 발제문은 문제설정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문제의 방향을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반드시 알려야 할까?”가 아니라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린다면 지켜야 할 한계는 무엇인가?”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지티브한 접근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언론의 보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언론의 자유인 것입니다. 다만 이 보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의 규정과 처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유명 스타의 성범죄혐의보도는 그 자체로서는 보도를 해야 할 가치나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명 스타의 성범죄혐의보도는 그 자체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과도 무관합니다. 이처럼 유명 스타의 성범죄혐의보도에 대해 아무런 의무나 권리가 없다고 했을 때, 아마도 대중의 말초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소재는 보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유명 스타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명 스타와 공동 주연을 맡고 있는 언론 역시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스타의 탄생에는 당사자와 엔터테인먼트회사, 언론 그리고 대중이 공모합니다. 흔히 스타는 대중의 연인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중이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란 대중에 의해 탄생하는 만큼 대중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는 숙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의 의의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에 어떠한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언론은 사인(私人)과 꼭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라는 본연의 모습을 망각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자 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유사 엔터테인먼트회사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언론인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어떤 보도를 하든지 자신의 보도가 오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언론인은 특정 행위의 수행자가 공인이나 사인이나 하는 것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일 것입니다. 언론인은 특정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늘 염두에 두고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에서 오는 곤란과 곤경은 언론인의 숙명으로서 감내하는 것이 참 언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은 왜 범죄 보도를 하는가

범죄를 비롯한 사건·사고 기사는 언론이 가장 기본으로 여기고 또 중요시하는 기사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언론은 왜 사건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왜 사건 기사를 보도하는가.

범죄 보도의 1차적 목적은 범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범죄 발생에 이르게 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유사 범죄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시 가장 중요한 목표다.

통상 언론이 범죄를 비롯한 중요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건 자체를 알리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외에 해설 기사가 동반된다. 해설기사에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 즉 상보 외에도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이 포함된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언론이 범죄 보도를 하는 목적을 설명해 준다.

그 외에도 언론의 범죄 보도는 해당 범죄 자체의 수사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도 한다.

사실 기자가 취재해 보도하는 대부분의 범죄와 사건·사고는 1단짜리 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해설기사까지 쓰는 범죄나 사건은 극히 드물기는 하다.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언론은 범죄와 사건을 대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

범죄 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범죄 보도를 왜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곧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대답이다. 범죄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도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면 언론의 범죄 보도는 범죄 자체와 사회 구조적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같은 통상적인 경우 범죄자 및 피해자의 신원이 범죄 보도에서 명시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범죄자 및 피해자의 신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된다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언론은 범죄 사건 보도에 있어 익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익명성 원칙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언론 보도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은, 혹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범죄 사건 보도 때 익명성 원칙을 점점 강화해 가는 추세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특수성이 있다. 때문에 언론은 성범죄 보도에 있어 다른 범죄보다 더 범죄의 구체적 방법 묘사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 등 인권 보호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 범죄의 특별한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신분과 범죄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범죄 보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익명성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공인의 범죄도 이 같은 익명성 원칙의 예외 중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인, 특히 좁은 의미에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인물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비해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공인은 일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사생활이나 명예 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혹은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인의 경우 공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자격이 '검증'되어야 하며, 국민은 공인의 그와 같은 자격 검증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그와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범죄 보도 익명성 예외의 판단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헌법적 권리이며, 이를 위한 언론의 자유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범죄 보도에 있어 익명성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외적으로 신원을 노출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공익적 필요성과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비교衡量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범죄 보도의 여부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언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도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언론이 판단해 보도할 경우 이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범죄 보도 여부 및 내용에 대해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고소·고발 접수 단계에서 범죄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의 공식 범죄정보 공개 이후에만 보도하도록 하는 것, 또 성범죄는 유죄 확정 전까지 혐의 보도를 금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첫 번째 의무다. 공인의 자격을 검증하고 감시 비판하는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또한 공인은 자신을 검증·감시·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방패 삼아 그 뒤에 숨거나, 사생활 보호를 무기로 언론을 침묵하게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인 법원과 수사기관 역시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도 언론은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범죄 보도 여부와 내용을 언론 자율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언론 스스로 사실관계 취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범죄 보도의 공익적 측면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함에 있어 인권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언론이 최선의 취재와 신중한 판단 없이 범죄 보도를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한 경우라면 언론의 책임은 불가피할 것

이다.

아울러 현재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보도 양상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지나친 상업주의와 화제성에 치중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보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

공인의 성범죄 보도가 알권리의 대상인지, 아니며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생활의 침해가 되는지에 관한 발제자의 논문을 읽고, 많은 점에서 공감하면서 범죄보도가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써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들의 범죄보도에 단순한 흥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간과하였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인의 성범죄 보도에 한정’하여 발제자의 논문과 관련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겠습니다.

I. 범죄보도의 의의와 문제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하나로 미디어를 통한 범죄보도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격권 내지는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발제문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공인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보도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논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특징은 공소제기 이전인 내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에서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보가 비공개되고 있지만, 공인의 경우에는 실명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범죄의 혐의보도가 폭로중심의 단정적·선정적 보도로 공인의 인격권 등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비교법적·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범죄보도는 공판정, 증인진술, 재판절차 등에서 집행유예와 같은 형벌의 양형이나 유·무죄 인정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도 있다. 즉 단정적, 편파적, 선정적 범죄 혐의보

도로 인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일반 국민들에게 유·무죄의 예단을 갖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이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보도는 사회 예방적, 사회 방어적 측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긍정되고 있다. 발제문에서도 범죄보도는 규범안정화 기능,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와 바람직한 행위의 한계설정기능, 권력 감시기능 등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II. 공인에 대한 범죄보도

발제문은 공인의 성범죄 보도의 헌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1) 공인의 성범죄보도는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 이후나,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범죄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범죄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전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또는 세부적인 수사진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인에 대한 성범죄의 혐의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인 범죄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2) 그리고 성범죄 혐의보도는 피의자로 지목된 공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와 함께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3) 공인의 내밀한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적 문제와 관련된 성범죄의 혐의보도는 비록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범죄의 혐의보도로 인한 공인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 등의 침해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된다. 인물중심으로 접근하는 견해에 의하면, 1) 범죄 혐의보도의 대상이 되는 공인의 범주를 중심으로, 그 대상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만약 공인에 해당된다면 그들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 등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범죄 혐의보도와 공인의 기본권과의 법익의 형량을 시도한다. 보도의 대상이 되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보면, 2) 독일 Wenzel과 같이, 인격의 영역은 내밀영역과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과 공공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내밀, 비밀, 사사적 영역은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아, 이러한 영역에서의 범죄 혐의보도는 공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등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결국 이러한 접근방법은 대체로 공인이라는 인물중심의 접근방법과 침해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영역 중심의 접근방법이다.

그런데, 공인, 사인, 공적 생활영역, 사적 생활영역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공인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게 정의된다. 공인과 공적인물로 구분하기도 하고, 공적 인물은 저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공인과 사회이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제한적 공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다.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도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인의 범주를 좁게 이해하여, 연예인 등이 공인이나 공적인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 등으로 공인과 같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비록 공인으로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순수한 사적 생활영역이 존재한다. 이처럼 공인, 사인, 공적 또는 사적 생활영역은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보다는 혼재한다. 이를 정리하면,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와 관련한 영역은 공인의 공적 관심사, 사인의 공적 관심사, 공인의 사적 관심사, 사인의 사적 관심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인의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서는 표현 및 보도의 자유가 우선한다. 사인의 사적 관심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이므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표현이나 보도의 자유보다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가 더욱 우선시 된다. 문제는 사인의 공적 관심사나 공인의 사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들 영역에서는 보도내용의 성격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 인물의 성격이나 보도내용에 비추어 공인성이나 공적 성격이 강할수록 보도의 자유가 우선시 될 수 있고, 그에 관한 보도는 수인해야 한다. 반면에 사인성이나 사적 관심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가 후퇴될 수밖에 없다.

III. 공인에 대한 범죄보도와 사생활 등의 침해 여부

발제문에서는 공인의 성범죄 보도가 문제되고 있다. 공인의 성범죄보도가 공인의 공적 관심사인지를, 공인의 사적 관심사인지를, 사인의 공적 관심사인지가 문제된다. 성범죄

보도의 특징은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성적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지만,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인의 성범죄 혐의’는 성적 취향이나 습관 등의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때문에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는 ‘공인이나 공적인물’ 또는 ‘공적 관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고, 성범죄 혐의보도는 어느 정도 수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성범죄의 혐의보도가 알권리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성범죄 혐의보도로 프라이버시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발제문에서는 성범죄 혐의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 문제될 수 있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공인의 성범죄에 관한 보도는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구성요소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인 의사형성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성범죄 혐의 보도라는 정보가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연예인 등을 포함한 공인의 성범죄 사실(혐의)은 이미 순수한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을 떠난 공적 관심사로서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물론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원칙이 없이 보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한계가 지켜져야 한다. 보도의 정보가치와 알권리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공인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형량이 필요하다. 공인에 관한 표현은 알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공인은 인격권의 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New York Times 사건에서도 공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공인의 성범죄 혐의는 공적 관심사로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 명예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보도는 허용될 수 없고 헌법적 보호가치를 누리지 못한다. 공인의 사생활로부터 오로지 호기심이나 자극, 즐거움을 얻기 위한 동기라면 보호가치가 없다. 그러한 자극적·선정적·단정적 보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 예방적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광고수입이나 언론매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대중의 구미에 맞는 자극적 주제를 선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인 진상규명, 감시 기능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독일판례의 입장이다. 공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일반의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서울지방법원 2000. 2. 2. 99가합64112)도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성범죄 사실에 대한 허위보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발제문에서 수사의 초기단계에서의 범죄의 혐의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주로 고소·고발이나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는 범죄가 허위로 판명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수사초기단계에서의 보도내용에 대한 진위발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공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이론에서도, ‘악의’라는 개념은 나쁜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임을 안 경우, 허위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로 이해되는 헌법적 개념이다.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고도로 인식한 경우라든지 또는 진실성에 관한 진지한 의심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형사판결의 확정 전, 수사기관의 공식적 수사결과 발표 이전의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IV. 성범죄혐의보도의 기준마련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는 취재원, 언론사의 자체 정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취재원에 의한 정보의 제공이나 언론사 스스로 습득한 자체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진실확인 의무가 아주 강하게 요구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통상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언론이 그들에게서 제공된 정보를 심사하고 확인할 의무는 없다.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관련 정보의 제공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에 의해 공판청구 전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훈령, 경찰청 직무규칙 등에서는 언론 공개기준을 마련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공개기준에는 다양한 예외를 두어 실질적으로는 피의사실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스스로도 보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윤리강령, 취재준칙, 보도준칙 등에서는 선정보도 금지, 피의사실 확인 노력, 피의자 해명기회 부여, 인권존중, 익명보도, 촬영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실명보도나 촬영 등 많은 부분에서 공인을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다.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는 그 성격에 따라 공인 내지는 공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도내용과 사생활의 범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 1) 우선 공인의 성적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한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
- 2) 비교법적으로 볼 때, 공인의 성범죄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격권이나 명예, 사생활의 자유보다 보도의 자유가 우선된다고 판단된다. 중대범죄는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선을 그음으로써 사회 예방적·방어적 기능을 가지며, 일반국민이 알권리로서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발제문의 주장과 같이 형사판결의 확정이나 수사기관의 공식적 발표 이후에는 비교적 공인의 성범죄 혐의라고 하더라도 보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V. 마치며

이상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보도되는 정보가치의 선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정적, 단정적 보도의 금지, 제공 자료의 진실확인, 피의자의 반론기회 제공 등을 통한 정보가치 있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저널리즘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 합 토 론

박중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일 (신라대 법학전공 교수)

저는 형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를 보고 헌법학자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경험과학자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저와 같은 규범학자들과 경험과학자들이 잘 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협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는 모 개그맨의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해당 사건이 별것 아닌 것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사건 중 강간혐의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를 해 공소 기각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형법학자로서 관심을 갖고 사건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당시 언론보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재판 종결 후 개그맨들이 정의는 살아있다면서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무죄판결이 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법학자들만 알아야 하는 것인가 보다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윤리강령은 법에서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신문사와 신문협회 등에서 자율적인 보도지침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공인에 관한 부분은 ‘공인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기준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언론이 스스로 세부적인 보도기준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는 것이 원래 법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맞고, 언론보도

의 영역이 계속해서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종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언론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보도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공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김봉수 (전 부산MBC 보도국장·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저는 토론회 제목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사가 뉴스를 정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먼저 이것이 중요한가 아닌가, 그리고 독자나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하고 있는 공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성과 관련된 범죄는 흥미로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사회적으로 공인은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계층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인기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 공인은 일반인과 다르게 사적인 영역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인의 사생활침해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발제자께서는 성범죄보도를 알권리와 연결 지어 말씀하셨는데 공인의 성범죄보도는 알권리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감독 기능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뜰이나 언론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제재를 가한다면 언론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흥미위주로 왜곡,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문제로 인해 언론 전체가 공인의 성범죄보도를 사생활침해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언론이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고소, 고발사건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만 보도대상이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

다. 발제문에 나온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 언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등 언론의 기본지침을 어긴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박종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 측면에서 공인에 대한 성범죄보도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부산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장)

사람들은 흔히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로 성공의 척도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명예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인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행위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인의 범죄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평범한 사람이니까 해도 되겠구나’ 라는 도덕적 해이, 수치심의 결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의 범죄보도는 유사범죄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에서조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다뤄 높은 시청률을 얻기도 하고, 범죄사건을 재연드라마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공인과 관련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부경대 법학부 교수)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사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을 보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혐의가 바로 유죄인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추론을 할 때는 충분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최근 종편 등 일부 방송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패널들이 어떤 연예인이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한 후, 사실이라면 어떻다, 사실이라면 과거에 그 사람이 한 발언은 사건과 이런 연관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패널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면 그것이 곧바로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패널 중에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적절한 선을 지키며 말하고는 있지만 혐의사실 자체가 바로 유죄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고려한다면 혐의사실이 바로 유죄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보도하는 태도에 대한 제재를 생각해 보아야하지 않을까합니다.

박중훈 (사회자/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

혐의보도라는 점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아쉽게도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간략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 후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자의 입장을 떠나 일선에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범죄혐의 보도는 먼저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고소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고 사건화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져 성폭행인지 아닌지 경계에 있는 고소사건들이 수사나 재판결과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비일비

제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성범죄 고소사건들은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심지어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하는 피해자의 인식이나 사회적 환경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고소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판단되는 이유는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정토론 중 고소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강력한가에 따라 보도 가치와 보도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 이외의 증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또는 무혐의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는 좀 더 신중한 보도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보도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사후에 언론이 책임을 져야할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법원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지금까지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정해왔던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대폭 상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명예훼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3억 원까지 배상액을 높이기로 법원이 내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의 사후적 책임이 종전보다는 크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보도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공인의 성범죄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대상자의 사생활보호라는 양립하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